|  |  |  |
| --- | --- | --- |
|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권한 조정에 대한 위생부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청과 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위생국: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등 부서의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을 진일보 장려 및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이첩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10] 58호)의 요구에 따라, 《행정허가법》과 《의료기구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권한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의료기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의 초보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는다.  2. 중회합자, 합작 의료기구는 영리성 의료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고 비영리성 의료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다.  3. 당 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득하고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가 설립인(파트너), 법정대표자, 주소, 투자총액, 규모(병상 수, 치과의자), 진료과목 및 합자, 합작기간 또는 설립준비기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의 초보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의 설립, 변경 및 종료 등은 성급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신청인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설립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생행정부서의 심사허가 요구는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행방법》(위생부, 대외경제무역부 령 제1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이 통지는 인쇄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당 부가 수리한,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설립 프로젝트는 여전히 당 부가 심사 허가한다.  각 지역은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닥친 문제를 지체 없이 당 부 의료행정사(醫政司)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25일 |  | **卫生部关于调整中外合资合作**  **医疗机构审批权限的**  **通知**  各省、自治区、直辖市卫生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卫生局：  按照《国务院办公厅转发发展改革委卫生部等部门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的通知》（国办发〔2010〕58号）要求，根据《行政许可法》和《医疗机构管理条例》等相关规定，决定对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审批权限进行调整。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经医疗机构所在地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初审后，报省级卫生行政部门审批。  二、设置人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既可举办营利性医疗机构，也可以举办非营利性医疗机构。  三、已经我部和商务部批准设立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变更设置人（合作方）、法定代表人、地址、投资总额、规模（床位、牙椅）、诊疗科目及合资、合作期限或者筹建期限的，应当经医疗机构所在地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初审后，报省级卫生行政部门审批。  四、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设置、变更及终止等，经省级卫生行政部门批准后，申请人应当按照有关法律、法规向相应的商务主管部门提出申请。  五、申请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当提交的材料和卫生行政部门的审批要求按照《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卫生部、对外经贸部令第11号）的有关规定执行。  六、本通知自印发之日起施行。此前我部已经受理的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项目，仍由我部审批。  各地在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审批工作中遇到相关问题，应当及时向我部医政司反馈。  二〇一一年一月二十五日 |